

울산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110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변론 종결 2021. 3. 26

판결 선고 2021.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3,748,881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 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부산 연제구 D 지상 4층 건물 중 지하 1층 보일러실, 1층 안내카운터, 2층 여탕, 3층 남탕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원, 월 임료 400만원, 임대차기간 2019. 9.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7. 11. 24. 원고에게 2017. 11. 30.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0648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94,296,520원 및 그 중 186,880,520원에 대하여는 2018. 7. 20.부터, 7,416,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라.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은 2020. 4. 9. 선고 2019나52734판결로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판결의 재판과정에서 원고는 다음과 같은 금액의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일부 주장만 받아들여졌고, 2억 원 이상의 상계 주장 등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납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4,892,630원 불인정 텔레비전 수신요금 1,324,000원 불인정 기타 (인건비 등) 9,919,000원 855,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저나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은 피고의 허위 진술과 허위의 증거자료로 인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고는 미지급 차임 26,666,666원, 미납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4,892,630원, 텔레비전 수신요금 1,324,000원 등 합계 32,883,296원과 판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0,865,585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83,748,88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태홍